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차고지의 무단밤샘주차로 적발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실시하였으나, 운수종사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2일



1. 위반 내역 및 처분 대상자

연번	운전자명	생년월일	주 소	차량번호	위반일시	위반장소	위반내용	공고사유	비고
1	최*호	68011*	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**길 **	서울98사 ****	2026-07-31 12:58:00	노원구 한글비석로 480(보람아파트 인근)	차고지외 무단밤샘 주차	폐문 부재	등기우편 미송달
2	신*찬	81041*	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***	서울84사 ****	2026-02-28 2:04:00	위례서로 송파꿈에그린 2416동 인근	차고지외 무단밤샘 주차	폐문 부재	등기우편 미송달

2. 공고 기간 : 2026. 9. 2.~2026. 9. 16.

3. 의견진술 기간 : 2026. 9. 16.~2026. 10. 1.

4. 의견진술 방법 :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방문, 팩스(02-2116-4639) 또는 우편 제출

5. 공고 방법 :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

6.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
규정에 따라 행정처분(운수과징금 부과)됩니다.

7. 기타 문의 사항은 노원구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(☎ 02-2116-4043)로 문의
바랍니다.